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8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생략)</p>	<p>제40조(보수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

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8.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</p> <p>9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15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
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<신설></p> 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'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'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<u>A클래스·C클래스·Ce클래스·I클래스·W클래스 수익증권 :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</p> <p>2. <u>S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	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

<p><u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3. Cp클래스·S-P클래스 수익증권 : 환매 수수료 없음</u></p> <p><u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<u>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<u>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u>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